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검토 보고서

2023. 3. 31.(금)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희 의원 외 7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장정희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23. 3. 22.
- 회부일 : 2023. 3. 24. (의안번호 : 23-25)

2. 제안이유

-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범위 확대하여 제명 개정
-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참고사항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15조의2(노후설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 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 : '23. 3. 17 ~ '23. 3. 22)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 조례안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 안 제1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 안 제2조 제1호 중 ““장년(長年)층”이란 50세”를 ““중·장년(中、長年)층”이란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 안 제3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 안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 안 제5조에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 안 제9조(중전의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 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로 개정하는 것임.
-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국민의 안전한 노후준비를 위해 중·장년층의 실태조사와 위원회 기능을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u> <u>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u>장년층</u>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장년(長年)층</u>”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2. “인생이모작”이란 <u>장년층</u>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u> <u>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중·장년층</u>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u>중·장년(中·長年)층</u>”이란 40세 ----- -----.</p> <p>2. ----- <u>중·장년층</u> ----- ----- ----- -----.</p> <p>3. ----- <u>중·장년층</u> -----</p>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취업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신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중·장년층-----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
- 중·장년층-----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중·장년층-----

-----.

③ -----

중·장년층-----.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실태조사를 실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9조 (생략)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9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

-----.

1. 중·장년층 -----

2. 중·장년층 -----

3.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서 -----.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2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이윤미
연 락 처	02-3153-8857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

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